

대외경제개방정책의 문제점과 전망

◆ 문제점

극심한 소득격차(빈부격차) 발생

보수파와 개혁파간의 정책노선의 대립

추진에 따른 사상과 이념의 갈등

◆ 전망

◇중국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의 기초

- 자력갱생을 주로하고 국제협력을 종으로 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의 건설

◇경제개혁의 자본주의화의 경향 → 속도와 폭의 조절 → 중국식 사회주의의 지속

경제특구정책

- 건설자금은 외자도입이 위주
- 경제성분은 국가자본주의 성분이 위주
- 생산품은 해외판매를 위주
- 운행과 조절 → 시장조절을 위주
- 투자, 출입국 등 → 외국인 우대

경제특구의 의의와 성격

입지조건

의의

정책적 의의

- 외부세계 영향 최소화

경제적 의의

- “4개 창구 역할” - 경제발전과급효과
: 선진기술 도입, 선진관리경험 도입
현대지식 도입, 대외개방정책창구

체제적 의의

- 자본주의의 자금, 기술 및 경영관리 경험을 접목
-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실험장
- 중국 경제체제개혁의 길잡이 역할수행

성격

양면성

-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을 공유
→ (경제특구) 점차 자본주의적 성격으로 진행

◆ 행정 및 투자상의 편의와 특혜

- 출입국 수속절차 등 우선권 부여
- 특구내 경제활동의 자율성 부여

☞ 외국인투자기업 생산제품 : 원칙적으로 수출 목적

- 내수시장판매 경우 : 정부허가, 관세납부 요구
→ 외국인투자유치 장애요인으로 작용

수출의무조항 완화 : 일부 내수시장판매 허용

- 중국산 원자재 투입비율이 높은 것
- 외국인 투자자가 제공한 선진기술과 설비에 의해 생산된 것
- 중국에 대한 수입대체효과가 크고
- 가격이나 품질이 수입품과 동일한 것

◆ 토지개발과 이용상의 특혜

- 투자사업용 토지 사용료는 지형적 조건, 업종 및 사용연한에 따라 특혜 부여

- 허가일로 부터 5년동안 사용료 면제
- 면제기간 이후 3년간 50% 감면혜택
- 선진기술 관련 사업은 계속 토지사용료 면제신청이 가능

◆ 조세법상의 특혜 : 소득세

- 2008년부터 특별보세구역 등에 소재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율을 기존의 15%에서 연차적(단계적)으로 18%(2008년), 20%(2009년), 22%(2010년), 24%(2011년)로 상향조정하고 5년 후(2012년)에는 중국내 기업과 똑같이 25%의 세율을 적용

- 이는 경제특구, 보세구역, 경제기술개발구 등 동부연안의 경제개발구, 하이테크신기술개발구(북경 중관촌)의 외국기업에 적용

- 중국 진출 이후 처음 5년간 면세, 그 후 5년은 50% 감면 승인을 받은 외국기업은 동 혜택을 그대로 보호 받으며, 중서부지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게는 감면세율(15%)의 특혜세율 유지

고용특례의 적용

- 특구노동조례의 적용

- 임금수준

: 홍콩보다 낮으나 내지보다 높게
(低於香港 高於內地)